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1450(본소), 2019다291467(반소), 2019다291474(병합)
판결 [약정금 · 부당이득금반환 · 약정금]

재판경과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1450(본소), 2019다291467(반소), 2019다291474(병합)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1039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피고(반소원고), 상고인주식회사 B

피고, 상고인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현주, 이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현정, 양승국, 한정애

판결 선고2020. 5. 14.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전주)2019나10397(본소),
(전주)2019나10403(반소), (전주)2019나1041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의 유치권자라는 기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 권리를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원고 주장의 유치권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점유가 정당한 유치권에 기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의 시기, 내용, 이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와 피고 H은 원고의 유치권뿐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된 장애사유 일체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어서 원고의 유치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이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합의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치권의 존부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들을 기망하였거나 피고들이 그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가 정당한 유치권자라는 것은 화해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서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이 예정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예비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예비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서 유치권의 존부는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